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3. 7.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76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1992. 3. 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공보관 김한식)

가. 제안이유

'92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의 월액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

나. 주요골자

상임위원의 수당을 '92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531,000원으로 조정하고 월액수당의 100%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을 지급 (조례 제 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홍식)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정시책의 심도있는 홍보로 도민의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도 제고로 대국적인 동참 분위기조성과 효율적 홍보를 위해
위촉 운영되고 있는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상임위원에게 월 487,000원의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나
'92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월 531,000원의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및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없음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 (참석 9 인, 찬성 9 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문 대조표